

2003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782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11. 28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2. 11. 30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2. 12. 26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2. 제안이유

- 고성군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지역단위 인위적 재난에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 2003년 재난관리대상 시설중 공공시설에 대하여 관리등급 C급 이상으로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용역비 15,000천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코져 함.

3. 주요골자

- 기금조성
 - . '98 ~ 2002 총 기금조성액 : 93,514,590원
 - '98 ~ 2002 법정기금조성액 : 82,564,000원
 - '98 ~ 2002 기금 이자수입 : 10,950,590원
 - . 2003년 법정기금 예산액 : 18,224,000원
- 2003 기금사용계획 : 정밀안전진단비 15,000,000원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 재난관리 기금 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재난관리 기금의 적립)에 의거 매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 고성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 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고성군 안전대책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동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위험 시설 등의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8조의 정한바에 따라 기금운용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있음.
- 고성군 지역단위의 인위적 재난에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3년 재난관리 대상 시설중 관리등급 C등급 이상으로 정밀진단이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하여 용역비 15,000천원을 재난관리 기금에서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기금사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그러나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에 대한 시행사항과 재난안전 관리에 대한 사전대비책 등을 제출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물이 어디인가?
- 답 : 별도의 시설물이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관리대상 시설물중 정밀진단 필요시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운용 계획안임.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2. 12.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